

과징금 산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총수입금액

(2)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구급차운용수입금액

다. 과징금 산정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 수입금액(단위: 원)	1일 과징금(단위: 원)
1	2억5천만 이하	60,000
2	2억5천만 초과 ~ 5억 이하	110,000
3	5억 초과 ~ 8억 이하	180,000
4	8억 초과 ~ 11억 이하	230,000
5	11억 초과 ~ 14억 이하	270,000
6	14억 초과 ~ 17억 이하	290,000
7	17억 초과 ~ 20억 이하	300,000
8	20억 초과 ~ 50억 이하	500,000
9	50억 초과 ~ 80억 이하	600,000
10	80억 초과 ~ 110억 이하	700,000
11	110억 초과 ~ 140억 이하	800,000
12	140억 초과 ~ 170억 이하	900,000
13	170억 초과 ~ 200억 이하	1,000,000
14	200억 초과 ~ 230억 이하	1,100,000
15	230억 초과 ~ 260억 이하	1,200,000
16	260억 초과 ~ 300억 이하	1,300,000
17	300억 초과 ~ 350억 이하	1,400,000
18	350억 초과 ~ 400억 이하	1,500,000
19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1,600,000
20	500억 초과	1,670,000